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개정 조항</th><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 사유</th></tr>
<tr><td>제2조(교내장학금)</td><td>① 평보장학금
1. ~ 3. (생 략)
4. 장학대상자가 타장학 수혜로 인하여 제외되는 경우 후 순위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장학 종류별 수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tr><th>구분</th><th>급수</th><th>대상자</th><th>수혜내용</th><th>기타</th></tr>
<tr><td colspan="5">(생 략)</td></tr>
<tr><td>재학생</td><td colspan="4">재학인원이 25명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 1급(수업료 전액) 1명
· 2급(수업료 50%) 1명
· 3급(수업료 30%) 1명

· 재학인원 증감에 따른 선발인원은 아래표와 같이 한다.
<table>
<tr><th>인원 / 급수</th><th>0~24</th><th>25~49</th><th>50~74</th><th>75~99</th><th>100~</th></tr>
<tr><td>1급</td><td>1</td><td>1</td><td>1</td><td>1</td><td>1</td></tr>
<tr><td>2급</td><td></td><td>1</td><td>2</td><td>2</td><td>2</td></tr>
<tr><td>3급</td><td></td><td>1</td><td>1</td><td>2</td><td>3</td></tr>
</table></td></tr>
<tr><td colspan="5">(생 략)</td></tr>
</table></td><td>① 평보장학금
1. ~ 3. (생 략)
4. 장학대상자가 타장학 수혜 및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경우 후 순위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5. 평보장학 종류별 수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tr><th>구분</th><th>급수</th><th>대상자</th><th>수혜내용</th><th>기타</th></tr>
<tr><td colspan="5">(생 략)</td></tr>
<tr><td>재학생</td><td colspan="4">재학인원이 25명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 1급(수업료의 75%) 1명
· 2급(수업료의 50%) 1명
· 3급(수업료의 25%) 1명

· 재학인원 증감에 따른 선발인원은 아래표와 같이 한다.
<table>
<tr><th>인원 / 급수</th><th>0~24</th><th>25~69</th><th>70~99</th><th>100~</th></tr>
<tr><td>1급</td><td>1</td><td>1</td><td>1</td><td>1</td></tr>
<tr><td>2급</td><td></td><td>1</td><td>2</td><td>2</td></tr>
<tr><td>3급</td><td></td><td>1</td><td>1</td><td>2</td></tr>
</table></td></tr>
<tr><td colspan="5">(생 략)</td></tr>
</table></td><td>- 성적우수자 외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차별없이 주기 위하여 성적장학을 일부 축소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td></tr>
</table>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조(교내장학금)	⑲ 형설 장학금: 신입생 중 전업주부, 산업체 근무자(단, 직장의료보험 가입업체), ~~직업군인이~~ 입학하는 경우 매 학기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산업체 근무자는 입학식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로써 재학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인사정으로 인해 산업체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 장학금 신청당시 재직 중이면 지급 할 수 있다.) 2. ~~군위탁생~~은 제외한다.	⑲ 형설 장학금: 신입생 중 전업주부, 산업체 근무자(단, 직장의료보험 가입업체)가 입학하는 경우 매 학기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산업체 근무자는 입학식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로써 재학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인사정으로 인해 산업체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 장학금 신청당시 재직 중이면 지급 할 수 있다.) 2.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 군인우대 장학금이 별도로 있어 대상자에서 직업군인을 제외하고자 함.
제2조(교내장학금)	㉖ 군인우대 장학금: 신입생 중 ~~군위탁생은 입학금 및 매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㉖ 군인우대 장학금: 신입생 중 직업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학년 1학기는 제외) 1. 군위탁생은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등록금 본인부담 군인의 경우 수업료의 35%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직업군인과 군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장학제도를 확대하여 고등교육 기회 제공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개정 조항</th><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 사유</th></tr>
<tr><td>제2조(교내장학금)</td><td>㉟ 가산인재 육성 장학금: 신입생 중 수시모집 등록자는 입학학기에 한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해당연도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td><td>㉟ 가산인재 육성 장학금: 신입생 중 수시모집 등록자는 입학학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항목별 장학금액 및 지급여부는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2. 아래 항목별 장학지원 대상자는 학과 및 입학전형에 따라 선발 또는 제외 할 수 있으며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3. 장학 항목별 대상자는 아래표와 같다.
<table>
<tr><th>항목</th><th>대상</th></tr>
<tr><td>가산향토인재육성</td><td>포항, 경주, 영덕, 지역 고교 졸업자</td></tr>
<tr><td>가산지역인재육성</td><td>포항, 경주, 영덕 외 지역 고교 졸업자</td></tr>
<tr><td>가산선도인재육성A</td><td>보건계열 학과</td></tr>
<tr><td>가산선도인재육성B</td><td>공업 및 기타 계열</td></tr>
<tr><td>가산U턴인재육성</td><td>대학졸업자 전형 입학자</td></tr>
</table></td><td>- 장학금 항목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에게 폭 넓은 장학혜택을 주고자 함.</td></tr>
</table>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개정 조항</th><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 사유</th></tr>
<tr><td rowspan="2">제2조(교내장학금)</td><td>㊱ ~~생활관 장학금: 신입생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외국 유학생과 재학 중 우리대학 학생회 또는 언론국 활동을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생활관비를 면제 할 수 있다.~~
~~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생활관비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다.~~
~~2. 외국유학생은 생활관비의 50%를 면제 할 수 있다.~~
~~3. 학생회 및 언론국 활동자는 생활관비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다.~~</td><td>㊱ 가산홈지원 장학금: 우리대학 신입생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생활관비를 면제 할 수 있다.
1. 가산홈지원A의 경우 매년 학과 및 입학전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으며 그 결정은 장학위원회에서 한다.
2. 항목별 대상자 및 면제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table><tr><th>항목</th><th>대상</th><th>면제내용</th></tr><tr><td>가산홈지원A</td><td>신입생 중 포항 외 지역 고교 졸업자(단, 소속 학과장 추천자 중 생활관장이 통학에 어렵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포항 읍·면지역 고교 졸업자는 면제할 수도 있다.)</td><td>입학학기에 한해 80%면제</td></tr><tr><td rowspan="3">가산홈지원B</td><td>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td><td>전액면제</td></tr><tr><td>외국유학생</td><td>50%면제</td></tr><tr><td>학생회 및 언론국 활동자</td><td>전액면제</td></tr></table></td><td>- 신입생들에게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함.</td></tr>
<tr><td>㊳ 전공심화 장학금: 전공심화 과정으로 입학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td><td>㊳ 전공심화 장학금: 전공심화 과정으로 입학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지급금액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td><td>- 전공심화 장학금액 책정과정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td></tr>
</table>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조(교내장학금)	<신 설>	㉴ 전공인재육성 장학금: 신입생 중 전공관련 인재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학기에 한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학과별 선발 인원 및 지급금액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 전공관련 장학을 신설하여 우수인재를 모집하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제3조(교외장학금)	① 교외 장학금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의 장학기관, 산업체 및 개인 독지가가 거탁한 재원에서 지급 되는 것을 총칭한다.~~ ②~~학과가 지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각 학과 순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정은 장학위원회에서 한다.~~	① 교외 장학금은 기업, 교외단체(개인포함) 등 교외기관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단, 국고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은 제외) ② 교외장학생 선발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추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외기관(개인포함)이 선발기준을 제시한 경우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단,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기준을 재요청 하여야 한다.) 2. 교외기관(개인포함)이 특정학생을 지정하는 경우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 요구한 기부금 약정서 또는 공문을 제출 받고 장학생을 선발·추천한다. 가. 특정학생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추천을 거부 할 수 있다. 나. 기부금 약정서 및 공문에는 지정한 학생과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다. 위의 서류 및 내용이 없을 경우 선발·추천을 거부 할 수 있다. 3.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지 아	- 교육부 교외장학생 선발통보 공문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외장학생 선발 기준을 시행세칙에 명시하고자 함.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3조(교외장학금)		니하였을 경우 추천·선발 기준은 아래와 같다.(단, 추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특정학과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도 포함한다.) 가. 교외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은 가계곤란, 성적우수, 봉사활동 우수, 외부대회 입상자, 대외기관 표창수상자, 사회적 배려계층(장애 및, 다문화), 우리대학 학생자치 또는 언론국 활동자 중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추천하여야 한다. (단, 위 사항 외에 선발·추천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학과 또는 부서회의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선발·추천 할 수 있다.) 나. 교외기관이 특정학과를 지정할 경우 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학과를 지정하여 해당학과에서 선발·추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서 선발·추천 할 수 있다. (단, 대상학과 지정 등의 결정은 총장이 한다.) 다. 해당학과 및 부서는 선발·추천 절차를 명시한 서류 및 선발·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계곤란 증명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위의 선발·추천 기준 외에 해당 학과 및 부서회의를 거쳐 기타사유로 선발·추천 할 경우 회의록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3조(교외장학금)	~~③추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탁처로부터 수혜자가 지정된 장학금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추천 분야별로 해당 학과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도록 한다.~~ ~~2. 사원 자녀와 같이 수혜자가 명시되어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해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다.~~ 3. <삭 제> <신 설>	마. 장학생 선발·추천 절차 및 방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경우 선발·추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총장이 한다. 바. 선발·추천 기준을 명시한 서류는 우리대학 별도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재학생, 교직원, 교외기관이 선발절차 및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1. ~ 3.<삭 제> ④ 우리대학과는 별도로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교외기관 서류에 우리대학 총장 명의의 추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하여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줄 수 있다.(단, 해당학생은 우리대학 별도양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장학금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9항·제26항·제35항·제36항 및 제39항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3조(교외장학금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되는 장학생도 적용한다.	